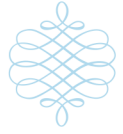


푸른바람이 흐르는
ECO - HU(休) MAN CITY



여수 죽림1지구





본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푸른바람이 흐르는
ECO-HU(休) M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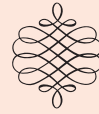
여수 죽림1지구



사업개요

- ◆ 면 적 : 986천㎡
- ◆ 계획인구 : 13,864명 (5,776세대)
-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

푸른바람이 흐르는
ECO-HU(休) M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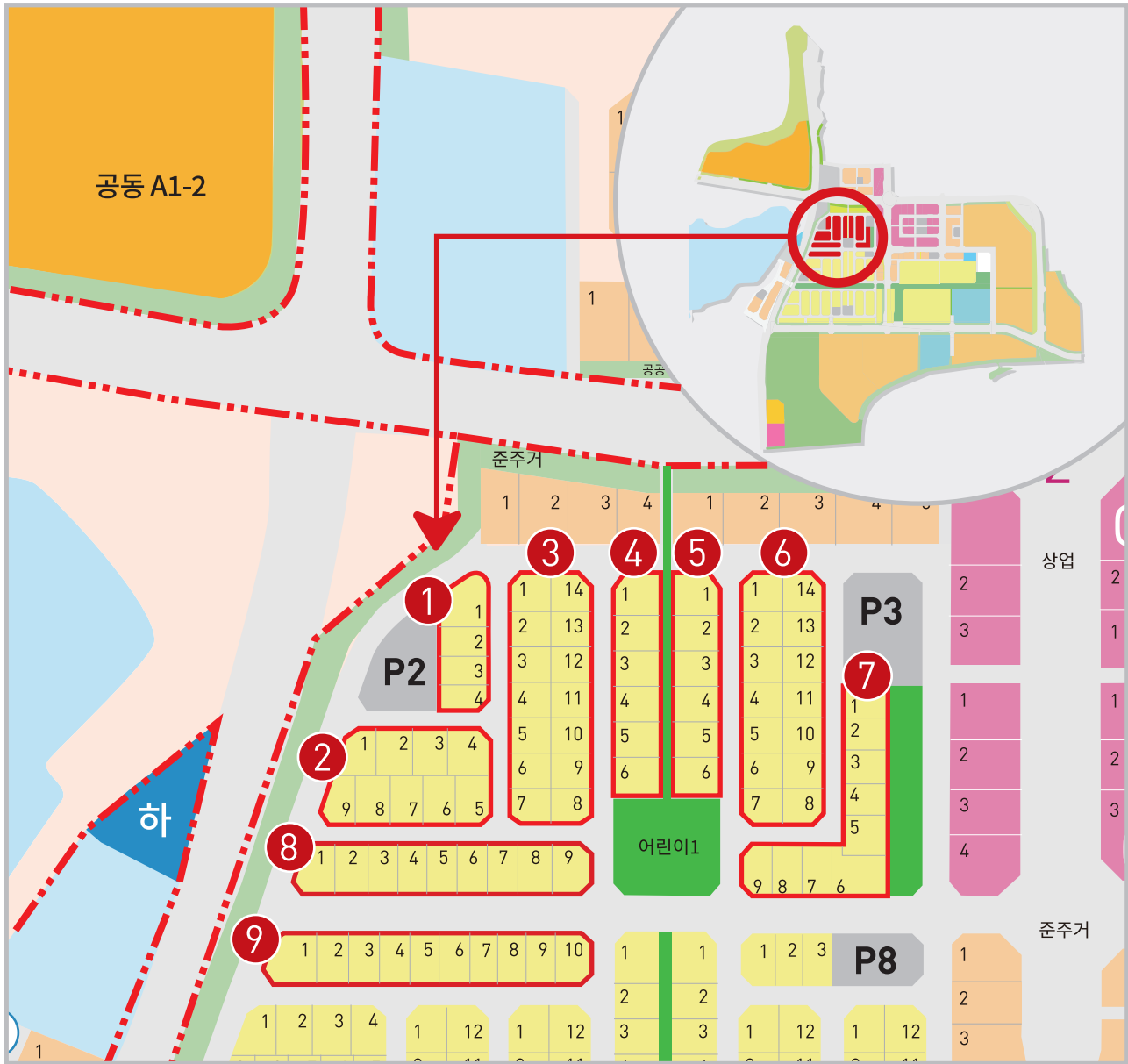


여수 죽림1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분양계획	구분	공급대상	공급시기 (예정)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
	단독주택용지	이주자, 협의 양도인	2022년	추첨	감정가격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실수요자	2023년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2022년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시설용지	실수요자	2023년	경쟁입찰	낙찰가격
	준주거시설용지	실수요자	2022년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용지	실수요자	2023년	경쟁입찰	낙찰가격
	문화시설용지	실수요자	2023년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용지	실수요자	2023년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용지	실수요자	2023년	경쟁입찰	낙찰가격

단독주택용지 ('22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 점포형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 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안마시설소, 안마원 및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01. 단독주택용지 B1·1~ 9

가지번	면적 (㎡)	가지번	면적 (㎡)	가지번	면적 (㎡)
B1-1-1	234	B1-4-1	253	B1-7-2	234
B1-1-2	232	B1-4-2	251	B1-7-3	234
B1-1-3	232	B1-4-3	250	B1-7-4	235
B1-1-4	232	B1-4-4	250	B1-7-5	235
B1-2-1	245	B1-4-5	251	B1-7-6	293
B1-2-2	245	B1-4-6	251	B1-7-7	234
B1-2-3	244	B1-5-1	253	B1-7-8	234
B1-2-4	245	B1-5-2	251	B1-7-9	234
B1-2-5	241	B1-5-3	250	B1-8-1	250
B1-2-6	240	B1-5-4	250	B1-8-2	250
B1-2-7	240	B1-5-5	251	B1-8-3	250
B1-2-8	240	B1-5-6	251	B1-8-4	249
B1-2-9	241	B1-6-1	221	B1-8-5	249
B1-3-1	221	B1-6-2	220	B1-8-6	249
B1-3-2	220	B1-6-3	220	B1-8-7	250
B1-3-3	220	B1-6-4	220	B1-8-8	250
B1-3-4	220	B1-6-5	220	B1-8-9	250
B1-3-5	220	B1-6-6	220	B1-9-1	249
B1-3-6	220	B1-6-7	221	B1-9-2	249
B1-3-7	221	B1-6-8	221	B1-9-3	249
B1-3-8	221	B1-6-9	220	B1-9-4	249
B1-3-9	220	B1-6-10	220	B1-9-5	248
B1-3-10	220	B1-6-11	220	B1-9-6	248
B1-3-11	220	B1-6-12	220	B1-9-7	249
B1-3-12	220	B1-6-13	220	B1-9-8	249
B1-3-13	220	B1-6-14	220	B1-9-9	249
B1-3-14	220	B1-7-1	235	B1-9-10	249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세대수 : 6세대 이하

단독주택용지 ('22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 점포형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 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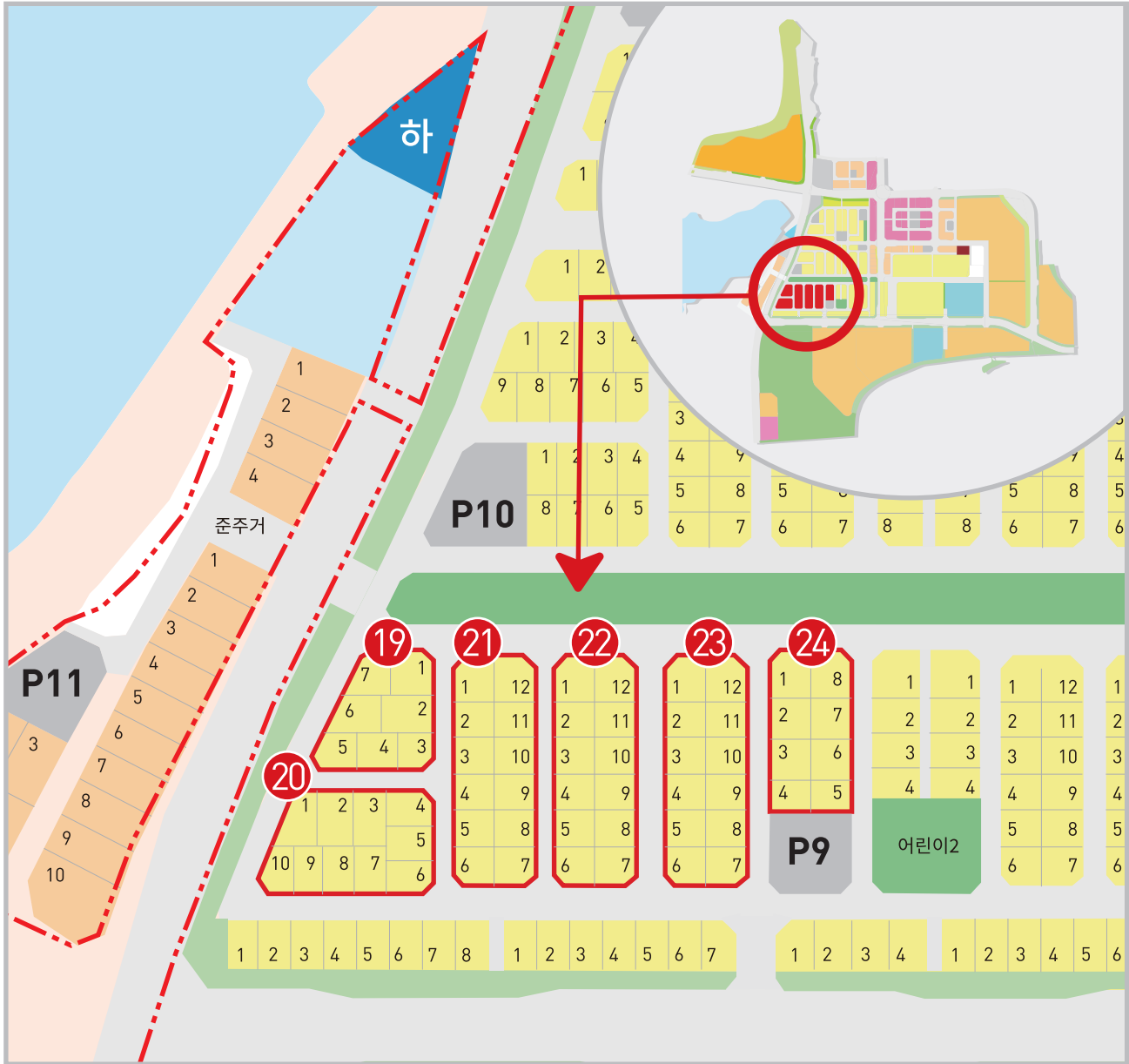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01. 단독주택용지 B1·10 ~ 18

가지번	면적 (㎡)	가지번	면적 (㎡)	가지번	면적 (㎡)
B1-10-1	266	B1-13-1	228	B1-16-2	234
B1-10-2	251	B1-13-2	228	B1-16-3	234
B1-10-3	251	B1-13-3	228	B1-17-1	228
B1-10-4	252	B1-13-4	228	B1-17-2	228
B1-10-5	252	B1-13-5	228	B1-17-3	228
B1-10-6	252	B1-13-6	228	B1-17-4	228
B1-10-7	252	B1-13-7	228	B1-17-5	228
B1-10-8	252	B1-13-8	228	B1-17-6	228
B1-10-9	238	B1-13-9	228	B1-17-7	228
B1-11-1	231	B1-13-10	228	B1-17-8	228
B1-11-2	231	B1-13-11	228	B1-17-9	228
B1-11-3	231	B1-13-12	228	B1-17-10	228
B1-11-4	233	B1-14-1	250	B1-17-11	228
B1-11-5	233	B1-14-2	248	B1-17-12	228
B1-11-6	231	B1-14-3	248	B1-18-1	221
B1-11-7	231	B1-14-4	248	B1-18-2	221
B1-11-8	231	B1-14-5	248	B1-18-3	220
B1-12-1	228	B1-14-6	248	B1-18-4	220
B1-12-2	228	B1-14-7	248	B1-18-5	221
B1-12-3	228	B1-14-8	250	B1-18-6	221
B1-12-4	228	B1-15-1	250	B1-18-7	221
B1-12-5	228	B1-15-2	248	B1-18-8	221
B1-12-6	228	B1-15-3	248	B1-18-9	220
B1-12-7	228	B1-15-4	248	B1-18-10	221
B1-12-8	228	B1-15-5	248	B1-18-11	221
B1-12-9	228	B1-15-6	248	B1-18-12	221
B1-12-10	228	B1-15-7	248		
B1-12-11	228	B1-15-8	250		
B1-12-12	228	B1-16-1	234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세대수 : 6세대 이하

단독주택용지 ('22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 점포형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 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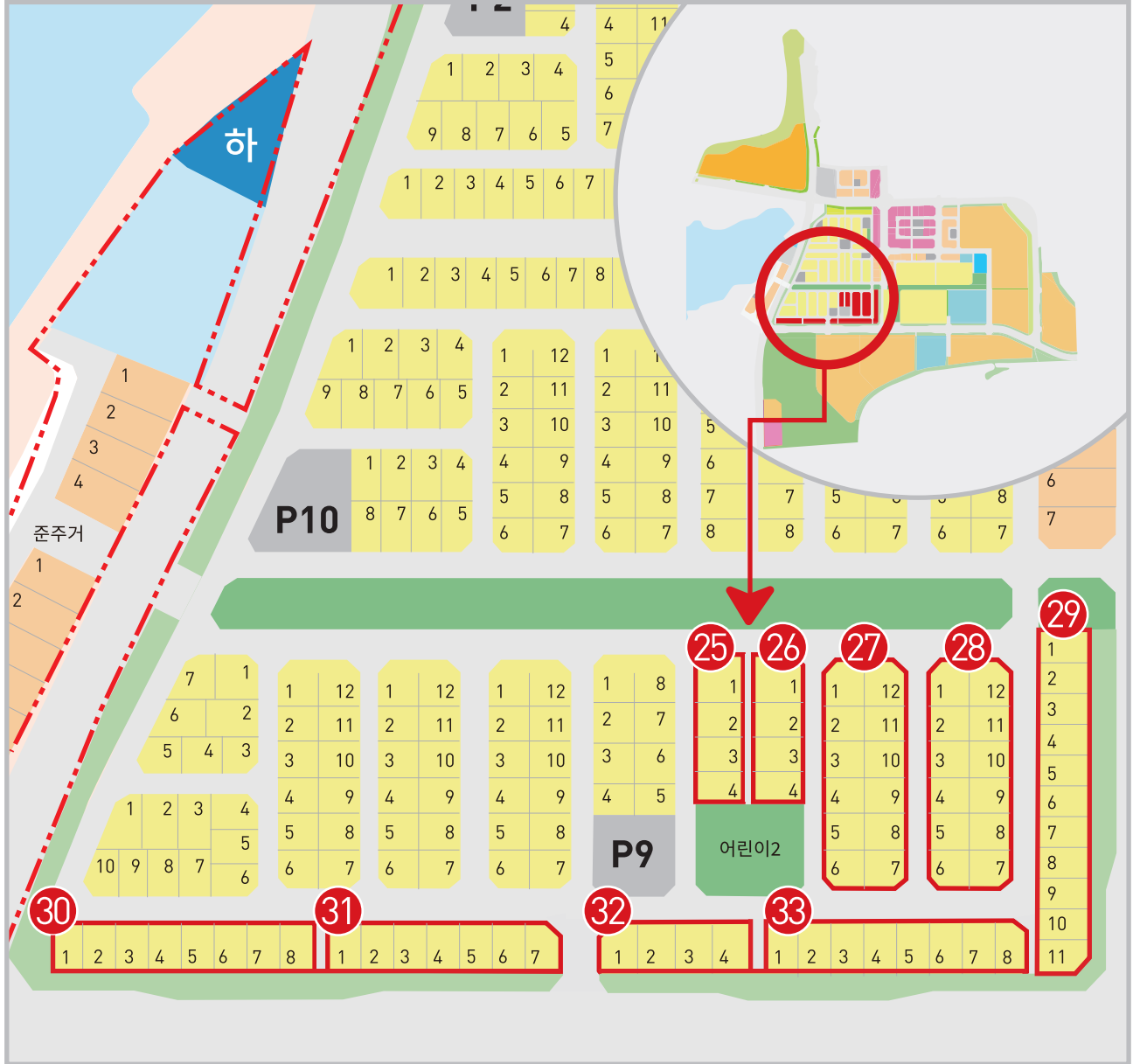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01. 단독주택용지 B1·19~24

가지번	면적(m ²)	가지번	면적(m ²)	가지번	면적(m ²)
B1-19-1	248	B1-21-5	248	B1-23-2	248
B1-19-2	248	B1-21-6	250	B1-23-3	248
B1-19-3	248	B1-21-7	250	B1-23-4	248
B1-19-4	248	B1-21-8	248	B1-23-5	248
B1-19-5	249	B1-21-9	248	B1-23-6	250
B1-19-6	248	B1-21-10	248	B1-23-7	250
B1-19-7	249	B1-21-11	248	B1-23-8	248
B1-20-1	248	B1-21-12	250	B1-23-9	248
B1-20-2	248	B1-22-1	250	B1-23-10	248
B1-20-3	248	B1-22-2	248	B1-23-11	248
B1-20-4	240	B1-22-3	248	B1-23-12	250
B1-20-5	240	B1-22-4	248	B1-24-1	250
B1-20-6	240	B1-22-5	248	B1-24-2	248
B1-20-7	248	B1-22-6	250	B1-24-3	248
B1-20-8	247	B1-22-7	250	B1-24-4	248
B1-20-9	248	B1-22-8	248	B1-24-5	248
B1-20-10	246	B1-22-9	248	B1-24-6	248
B1-21-1	250	B1-22-10	248	B1-24-7	248
B1-21-2	248	B1-22-11	248	B1-24-8	250
B1-21-3	248	B1-22-12	250		
B1-21-4	248	B1-23-1	250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세대수: 6세대 이하

단독주택용지 ('22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 점포형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 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01. 단독주택용지 B1·25~33

가지번	면적 (㎡)	가지번	면적 (㎡)	가지번	면적 (㎡)
B1-25-1	263	B1-28-5	257	B1-30-6	255
B1-25-2	262	B1-28-6	257	B1-30-7	255
B1-25-3	263	B1-28-7	257	B1-30-8	255
B1-25-4	263	B1-28-8	257	B1-31-1	256
B1-26-1	263	B1-28-9	256	B1-31-2	256
B1-26-2	262	B1-28-10	256	B1-31-3	256
B1-26-3	263	B1-28-11	256	B1-31-4	256
B1-26-4	263	B1-28-12	257	B1-31-5	256
B1-27-1	250	B1-29-1	243	B1-31-6	256
B1-27-2	248	B1-29-2	243	B1-31-7	257
B1-27-3	248	B1-29-3	243	B1-32-1	276
B1-27-4	248	B1-29-4	243	B1-32-2	276
B1-27-5	248	B1-29-5	243	B1-32-3	276
B1-27-6	250	B1-29-6	243	B1-32-4	276
B1-27-7	250	B1-29-7	243	B1-33-1	260
B1-27-8	248	B1-29-8	243	B1-33-2	260
B1-27-9	248	B1-29-9	243	B1-33-3	260
B1-27-10	248	B1-29-10	243	B1-33-4	260
B1-27-11	248	B1-29-11	244	B1-33-5	260
B1-27-12	250	B1-30-1	256	B1-33-6	260
B1-28-1	257	B1-30-2	255	B1-33-7	260
B1-28-2	256	B1-30-3	255	B1-33-8	261
B1-28-3	256	B1-30-4	255		
B1-28-4	256	B1-30-5	255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세대수 : 6세대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3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용도
 - 단독주택(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제외) - 단독형 집합주택
 - 3층이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단, 아파트, 기숙사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보호구역내 위치한 획지에 한함)

0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B2

가지번	면 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세대수
B2-1	13,113	60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34
B2-2	12,375	60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32
B2-3	24,638	60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65



공동주택용지 ('22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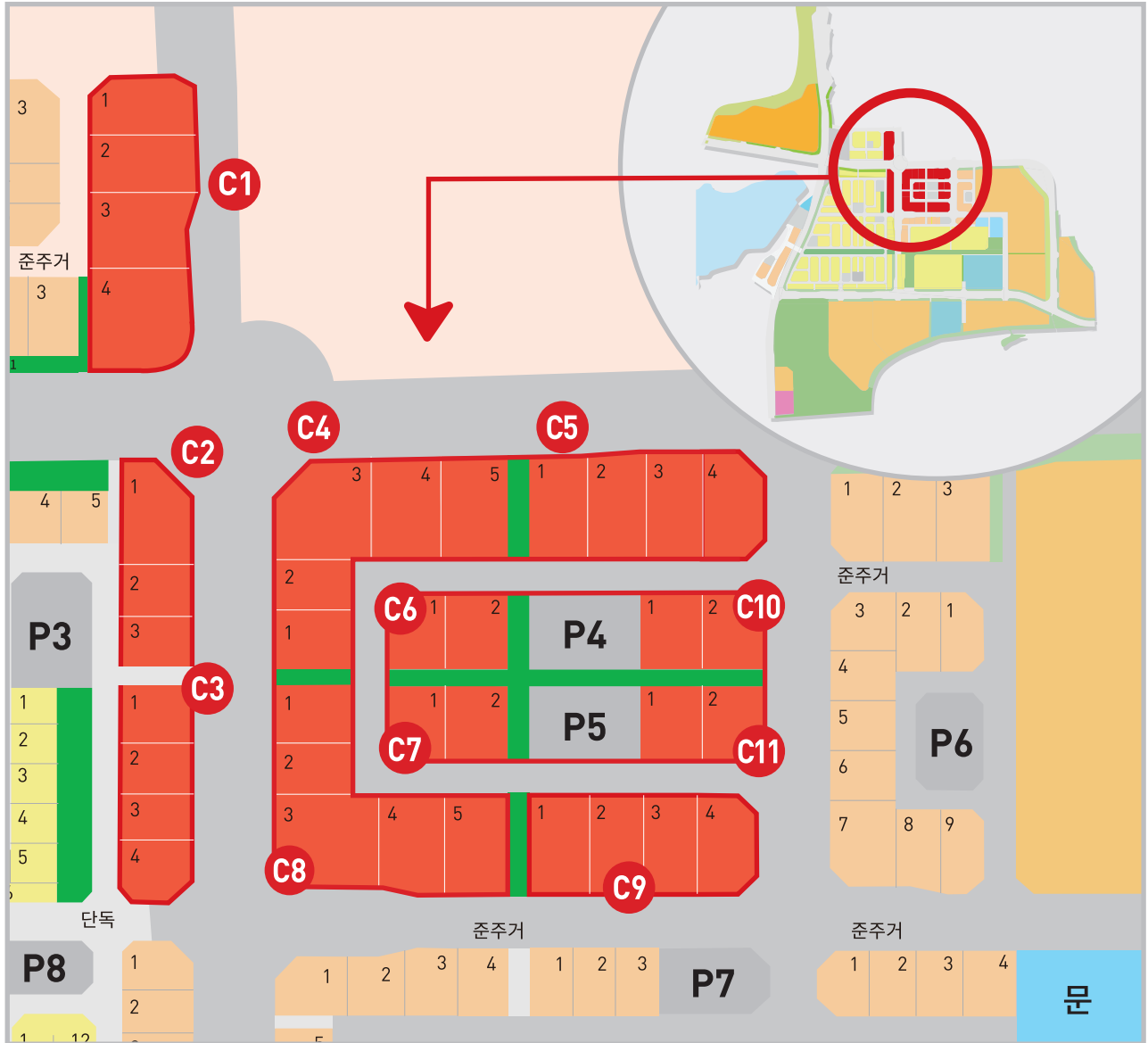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03. 공동주택용지 A1, A7

가지번	주택규모	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세대수
A1-1	60m ² ~ 85m ² 이하 / 85m ² 초과	18,502	50 이하	200 이하	20층 이하	261
A1-2		42,838	50 이하	180 이하	20층 이하	680
A7-1	60m ² ~ 85m ² 이하 / 85m ² 초과	46,005	50 이하	200 이하	20층 이하	648
A7-2		47,108	50 이하	180 이하	20층 이하	748



상업시설용지 ('23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기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단, 카지노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보호구역내 위치한 획지에 한함)

04. 상업시설용지 C1 ~ 11

가지번	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C1-1	843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2	84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3	84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4	1,441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2-1	975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2-2	54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2-3	54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3-1	54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3-2	54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3-3	54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3-4	561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4-1	66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4-2	66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4-3	1,206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4-4	988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4-5	988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5-1	865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5-2	865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5-3	875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5-4	881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6-1	655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6-2	654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7-1	655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7-2	654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8-1	66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8-2	66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8-3	1,183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8-4	962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8-5	962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9-1	80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9-2	80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9-3	801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9-4	801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0-1	669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0-2	669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1-1	669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1-2	669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준주거 시설용지 ('22~23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공연장, 집회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폭원 15m이상 도로에 접하고, 연면적 2,000㎡ 미만 소매시장, 상점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도서관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2m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연면적 3,000㎡ 미만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공공업무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보호구역내 위치한 획지에 한함)

05. 준주거 시설 용지 D1·1 ~ 7

가지번	면 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D1-1-1	517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	516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3	516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4	516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5	516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6	517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2-1	43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2-2	43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2-3	431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2-4	471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2-5	47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3-1	636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3-2	63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3-3	63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4-1	586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4-2	58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4-3	58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5-1	45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5-2	41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5-3	4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5-4	4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6-1	4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6-2	4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6-3	4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6-4	4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6-5	4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7-1	456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7-2	45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7-3	45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7-4	46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7-5	46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7-6	46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7-7	46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준주거 시설용지 ('22~23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공연장, 집회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폭원 15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연면적 2,000m² 미만 소매시장, 상점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도서관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2m 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연면적 3,000m² 미만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공공업무 시설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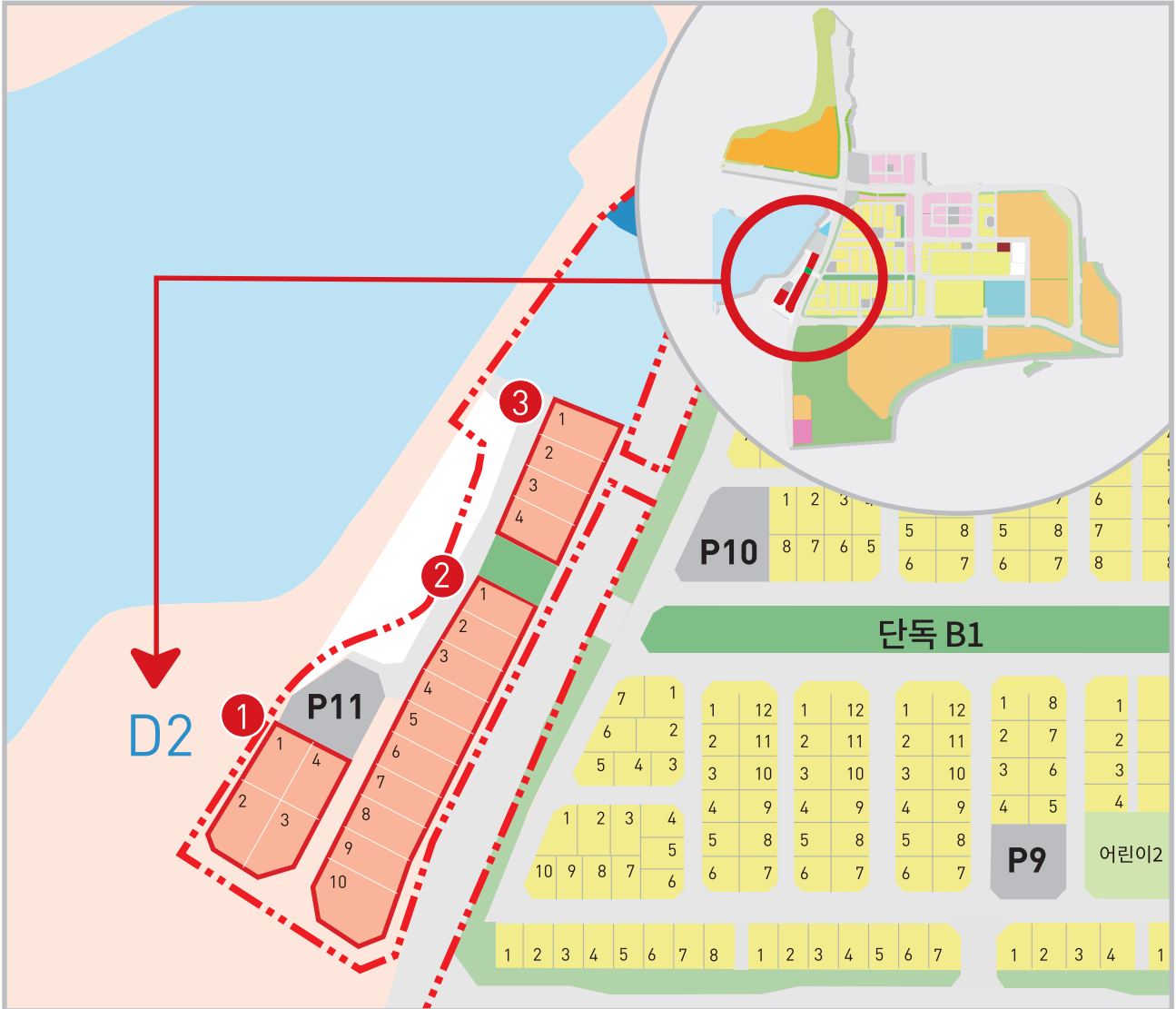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보호구역내 위치한 획지에 한함)

05. 준주거 시설 용지 D1·8 ~ 13

가지번	면 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D1-8-1	392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8-2	392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8-3	392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8-4	391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8-5	391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9-1	58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9-2	49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9-3	49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9-4	49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0-1	412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0-2	411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0-3	412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1-1	461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1-2	459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1-3	459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1-4	459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1	50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2	50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3	511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4	46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5	46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6	46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7	796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8	50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2-9	508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3-1	72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3-2	70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1-13-3	70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준주거 시설용지 ('22~23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공연장, 집회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폭원 15m이상 도로에 접하고, 연면적 2,000m² 미만 소매시장, 상점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도서관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2m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연면적 3,000m² 미만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공공업무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보호구역내 위치한 획지에 한함)

05. 준주거 시설용지 D2·1 ~ 3

가지번	면 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D2-1-1	5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1-2	5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1-3	513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1-4	5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1	46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2	46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3	46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4	46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5	465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6	48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7	480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8	5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9	514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2-10	691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3-1	453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3-2	453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3-3	453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2-3-4	452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주차장용지 ('23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P1, P4, P5, P6, P7,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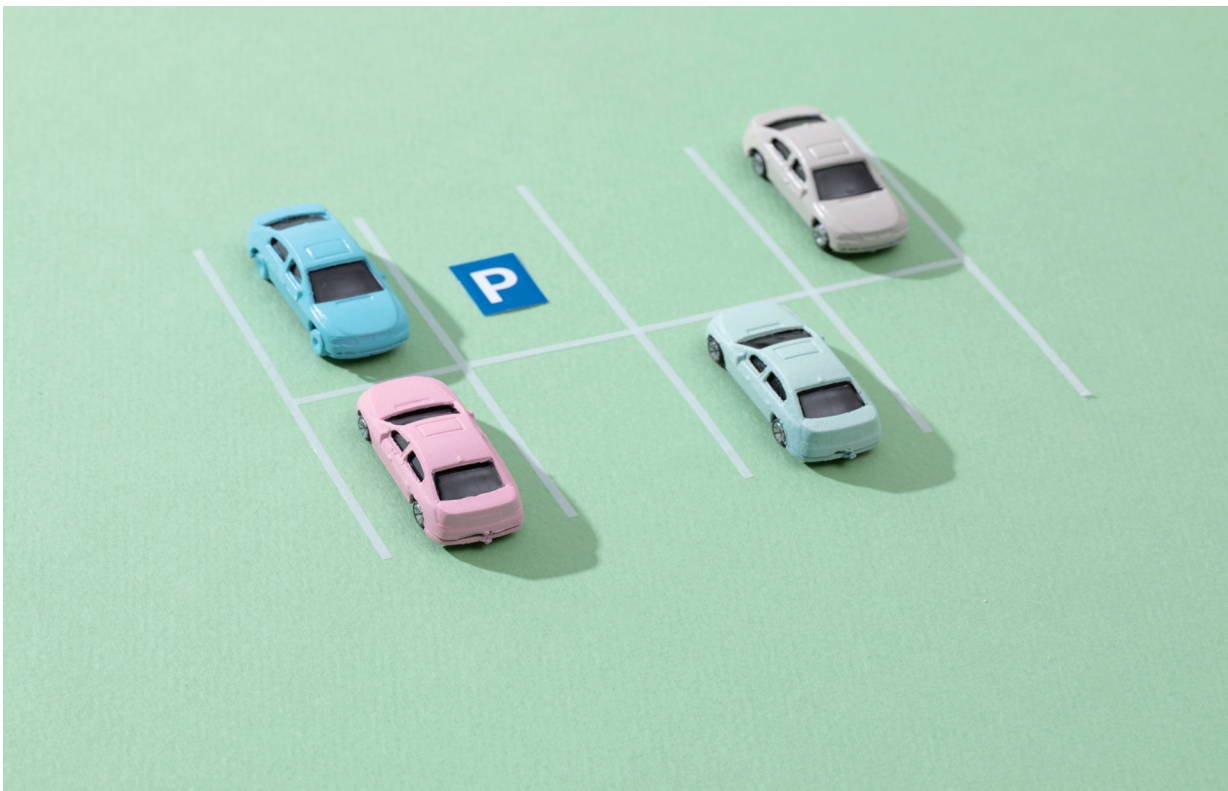
-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의 30%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 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P2, P3, P8, P9,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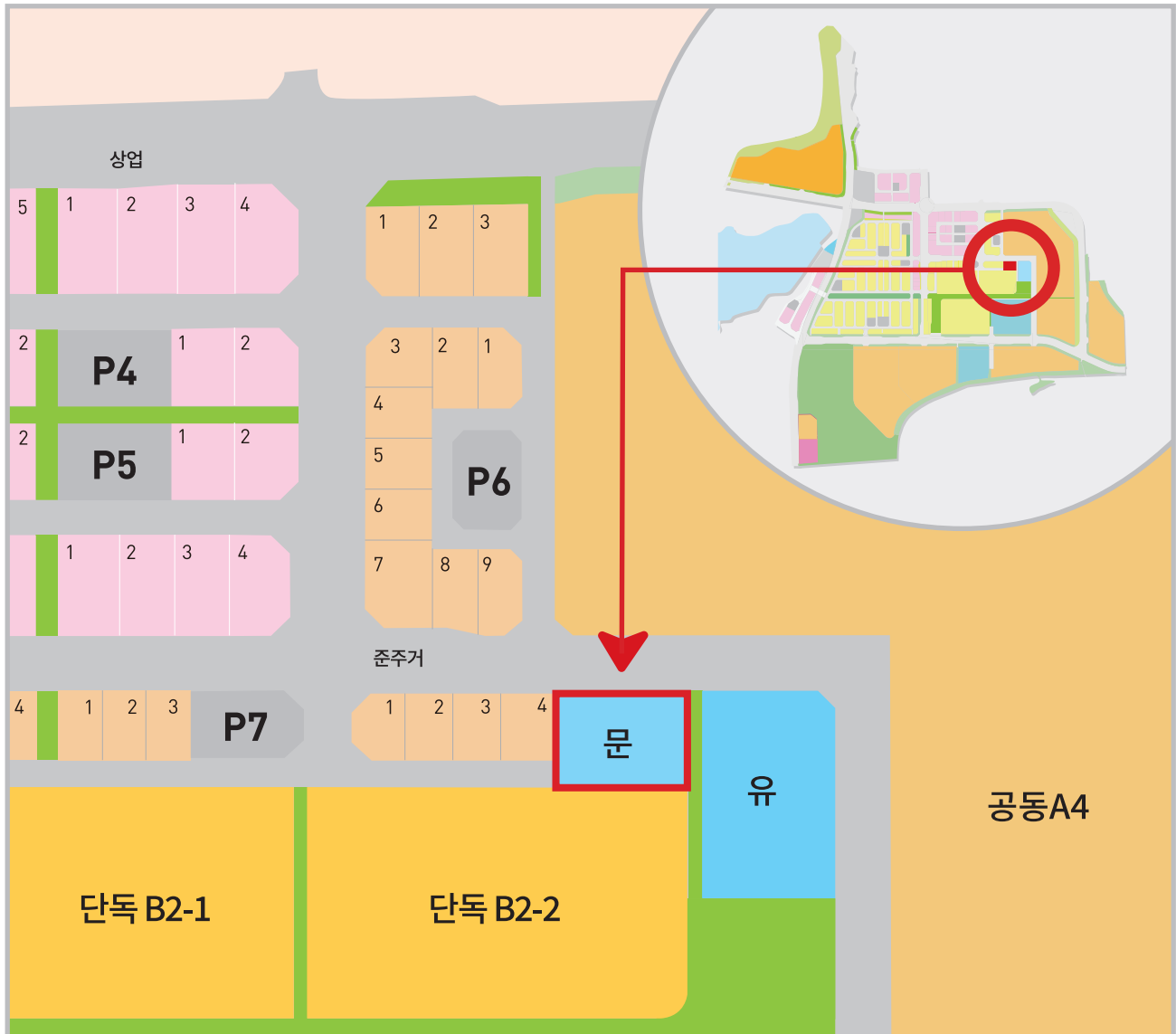
-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의 30%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 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비디�감상실,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06. 주차장용지 P1 ~ 10

가지번	면 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P1	899	80 이하	600 이하	7층 이하
P4	1,234	80 이하	600 이하	7층 이하
P5	1,234	80 이하	600 이하	7층 이하
P6	931	80 이하	600 이하	7층 이하
P7	1,004	80 이하	600 이하	7층 이하
P11	1,096	80 이하	600 이하	7층 이하
P2	955	80 이하	400 이하	5층 이하
P3	1,343	80 이하	400 이하	5층 이하
P8	682	80 이하	400 이하	5층 이하
P9	996	80 이하	400 이하	5층 이하
P10	1,299	80 이하	400 이하	5층 이하



문화시설용지 ('23년 공급 예정)



허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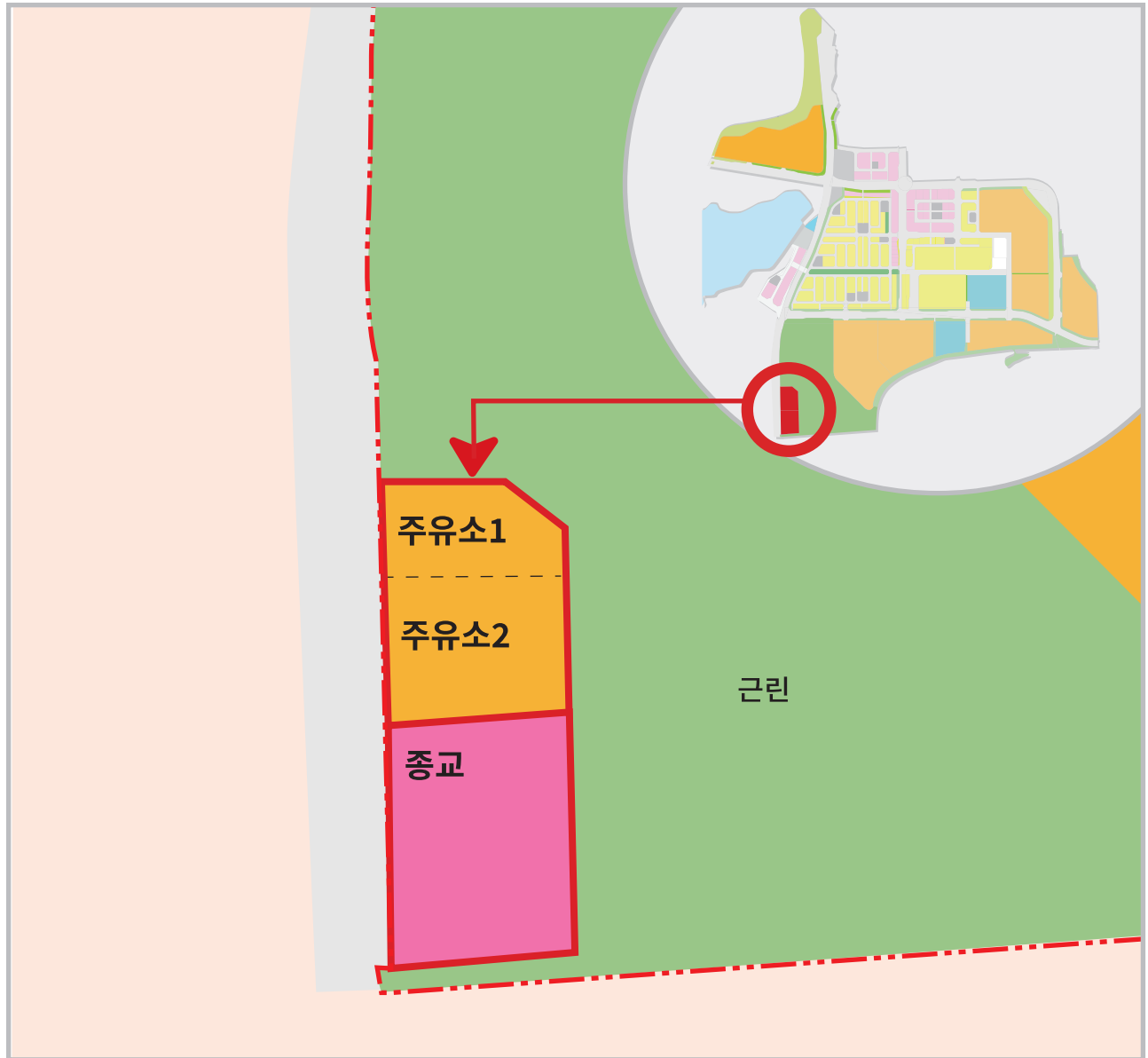
- 건축연면적의 30%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 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 소극장에 한정 한다.) 및 라목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도서관)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공공업무시설)의 시설

07. 문화시설용지

가지번	면 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문	1,736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주유소, 종교 시설용지 ('23년 공급 예정)



■ 종교용지

가지번	면 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종	6,126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단, 불안당은 제외함)

08 ~09. 주유소, 종교 시설용지

■ 주유소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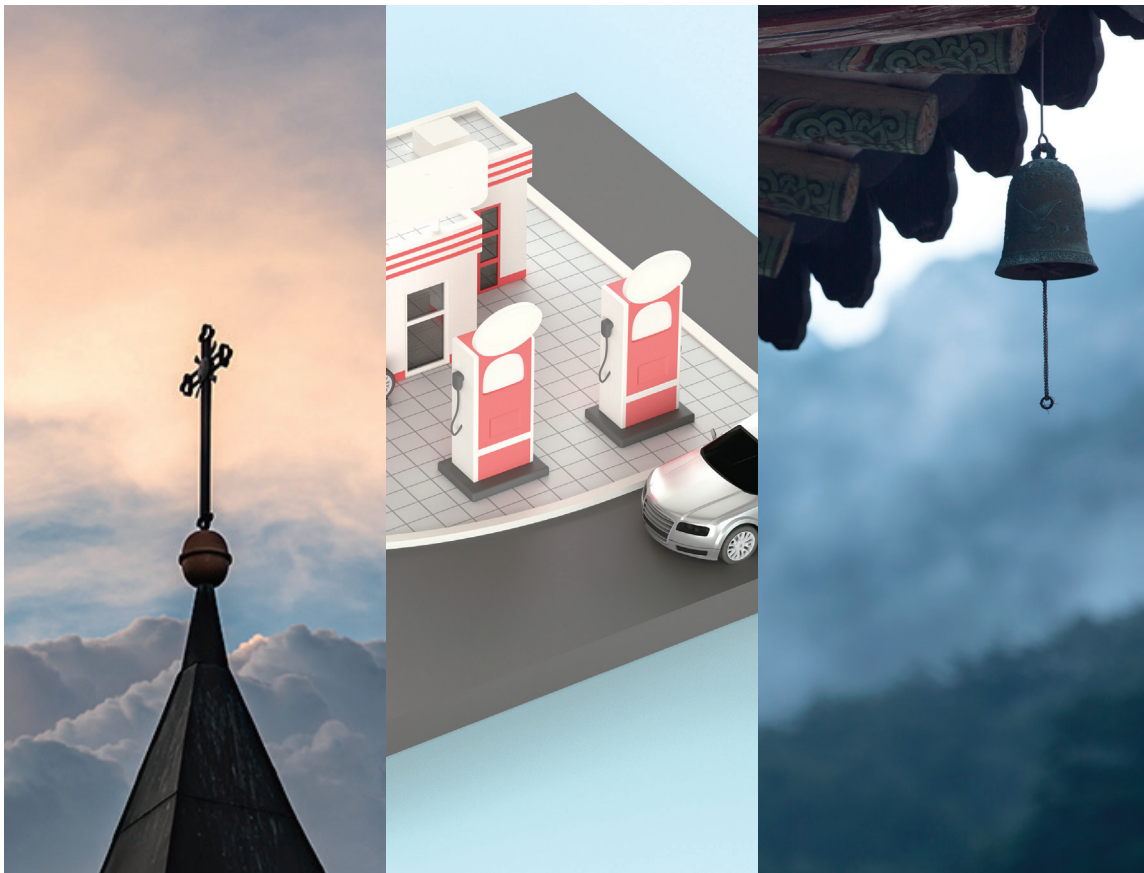
가지번	면 적(m ²)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주1	2,166	60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주2	4,208	60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허용용도

주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주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 2)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중 바목 정비공장





(5856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TEL.061-280-0643 FAX. 061-280-0649
www.jndc.co.kr

이 안내책자는 2021년 12월 사업진행현황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준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